

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

제 정: 1991.03.02.

최근개정: 2018.04.26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7장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자격시험의 종류)

-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석·박사학위과정 공히 학위청구논문심사의 제출에 앞서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②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2종으로 한다.
- ③ 예능계열의 경우 연주 또는 발표회를 갖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시험시기)

- ①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.
-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.

제 4 조 (자격시험의 출제위원)

- ① 영어의 시행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.
- ②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해당 외국어학과의 교수 또는 적절한 인물(교내 전임으로 해당 외국어 교수가 없는 경우)에 위촉하여 관리한다.
- ③ 종합시험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출제하고 그 시험은 교학과에서 관리한다.

제 5 조 (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)

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.

제 6 조 (응시절차와 수험료)

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각의 소정의 응시원서(별지1, 별지2)와 수험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외국어시험의 면제)

- ①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- ②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(70점 이상)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
- ③ 국가적으로 공인된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 토폴 530점(CBT 197점, IBT 71점), IELTS 5.5, TEPS 600점, CEFR B2를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 단 토익은 해당되지 않는다.[2018.04.26.개정]

제 8 조 (재응시)

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최소한 1학기가 경과한 이후에 재 응시할 수 있다.

제 2 장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

제 9 조 (시험 과목)

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. 단, 외국인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.

제 10 조 (합격 인정)

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단, 외국인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.

제 3 장 석사과정 종합시험

제 11 조 (응시 자격)

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.

- ①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
- ②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

제 12 조 (시험 과목)

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.

제 13 조 (합격 기준)

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 한다.

제 4 장 박사과정 외국어시험

제 14 조 (시험 과목)

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. 단, 외국인 원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한다.

제 15 조 (합격 인정)

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단, 외국인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
제 5 장 박사과정 종합시험

제 16 조 (응시 자격)

박사과정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54학점이상(석사 학위과정 이수학점 포함)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

어야 한다.

제 17 조 (시험 과목)

종합시험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.

제 18 조 (합격 기준)

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제 6 장 예능계열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

제 19 조 (신청 자격)

예능계열 석사과정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 신청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되, 자격시험과는 무관하다.

제 20 조 (심사 절차)

연주 또는 작품발표 2주 전까지 발표신청서(별지 3)를 제출하고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21 조 (심사 기준)

심사의 합격 기준은 ‘가’ 또는 ‘부’ 로 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‘가’ 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(별지 4).

- 부 칙 -

1. 본 개정 내규는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개정 내규는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개정 내규는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개정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9. 본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10.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11.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12. 본 개정 내규는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